(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750101-*****

####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1,403,900	2,777,251	696,969	309,202	5,187,322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단위:원)

			월별 공제대상금액			
78	종류	01월	02월	03월	04월	고레디사그에
구분	<del>οπ</del>	05월	06월	07월	08월	공제대상금액
		09월	10월	11월	12월	
		67,600	57,200	26,400	124,000	
현금영수증	일반거래	24,000	40,000	65,680	40,000	1,403,900
		67,420	102,700	350,000	438,900	
		7,400	48,610	59,460	25,660	
현금영수증	전통시장거래	174,600	7,920	296,250	498,990	2,777,251
		491,000	18,990	1,101,610	46,761	
		1,893	0	4,600	0	
현금영수증	대중교통거래	24,900	24,900	344,750	0	696,969
		130,640	90,700	69,140	5,446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미발급신고하기」)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동	750101-*****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단위:원)

	월별 공제대상금액					
78	, , , , , , , , , , , , , , , , , , ,	01월	02월	03월	04월	고레디사크에
구분	종류	05월	06월	07월	08월	공제대상금액
		09월	10월	11월	12월	
		32,170	32,170	53,652	48,110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비등 거래	0	107,000	19,910	16,190	309,202
		0	0	0	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미발급신고하기」)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2-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홍부인	810101-*****

####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160,460	448,832	265,350	143,530	1,018,172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단위:원)

		월별 공제대상금액				
78	조근	01월	02월	03월	04월	고레디사그에
구분	종류	05월	06월	07월	08월	공제대상금액
		09월	10월	11월	12월	
		7,310	16,000	11,600	21,160	
현금영수증	일반거래	24,490	17,840	17,840	17,840	160,460
		5,530	5,530	5,530	9,790	
		9,790	27,922	35,620	35,620	
현금영수증	전통시장거래	44,980	27,300	27,300	51,850	448,832
		51,850	24,330	39,830	72,440	
	현금영수증 대중교통거래	39,830	5,000	0	0	
현금영수증		39,320	111,530	0	0	265,350
		10,610	0	29,530	29,53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미발급신고하기」)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홍부인	810101-*****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단위:원)

			월별 공제	대상금액		
78	조금	01월	02월	03월	04월	고테디사그애
구분	종류	05월	06월	07월	08월	공제대상금액
		09월	10월	11월	12월	
		29,530	0	0	0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비등 거래	21,080	12,120	3,800	38,500	143,530
		0	38,500	0	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미발급신고하기」)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4-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장장모	620101-*****

####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141,240	1,513,296	87,600	96,380	1,838,516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단위:원)

	종류	월별 공제대상금액				
구분		01월	02월	03월	04월	공제대상금액
		05월	06월	07월	08월	중세네성급적
		09월	10월	11월	12월	
		45,540	580	580	580	
현금영수증	일반거래	8,540	8,660	3,420	4,900	141,240
		5,500	20,980	20,980	20,980	
현금영수증 전	전통시장거래	25,620	30,020	25,620	27,930	
		41,710	95,880	38,429	1,061,397	1,513,296
		61,390	61,450	0	43,850	
현금영수증	대중교통거래	0	18,480	0	0	
		0	0	8,500	8,500	87,600
		0	26,060	26,060	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미발급신고하기」)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장장모	620101-*****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종류	월별 공제대상금액				
		01월	02월	03월	04월	고레디사그에
		05월	06월	07월	08월	공제대상금액
		09월	10월	11월	12월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비등 거래	4,400	5,500	8,800	6,400		
	도서.공연비등 거래	5,100	8,110	0	0	96,380
		3,800	0	54,270	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미발급신고하기」)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6-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부친	420101-*****		

####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

일반	일반 전통시장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381,580	1,428,381	221,134	145,930	2,177,025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단위:원)

	종류	월별 공제대상금액				
구분		01월	02월	03월	04월	고레디사그에
		05월	06월	07월	08월	공제대상금액
		09월	10월	11월	12월	
		32,330	32,330	30,090	57,820	
현금영수증	일반거래	57,820	23,600	23,600	23,600	381,580
		22,130	22,230	39,390	16,640	
현금영수증	전통시장거래	39,420	38,500	92,760	54,650	1,428,381
		5,500	32,930	28,530	45,870	
		27,570	21,740	5,830	1,035,081	
현금영수증	대중교통거래	27,770	27,770	22,420	22,420	
		22,420	17,470	28,860	28,860	221,134
		0	0	9,690	13,454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 /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미발급신고하기」)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부친	420101-*****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종류					
		01월	02월	03월	04월	고레디사그에
		05월	06월	07월	08월	공제대상금액
		09월	10월	11월	12월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비등 거래	0	29,070	0	30,400		
	도서.공연비등 거래	30,400	30,400	0	0	145,930
		1,370	24,290	0	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미발급신고하기」)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8-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